

<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>

항목	세부내용												
개인,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	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-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												
자산취득비	-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) 노트북, 모니터, 프로젝터, 그래픽카드, 음향 장비 등 ※ 단,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지원금 인정이 가능함 ① 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 ② 공연·작품·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 -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. 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. (예시) 공연의상, 공연장·전시장 내 좌대 및 대여가 불가능한 재료 등												
행사 답사비 등 비용	- 교통비(항공권 포함), 숙박비, 유류대, 주차료 등 ※ 작품 운송과 관련된 운송 비용 인정												
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	- 상금, 상금 심사비 등												
기타 사항	-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- 각종 수수료 불가(문자서비스, 공동인증서 발급, 이체 수수료 등) - 세금/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, 과태료 -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[붙임1]지원금 관리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고												
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용	-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부가가치세 환급(공제) 대상</th><th>개인 및 부가가치세 미환급(미공제) 대상</th></tr><tr><td>선정자 유형</td><td>① 일반과세자 ※면세/과세를 겸업하는 일반사업자 중 지원금으로 과세사업을 수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 포함 ② 간이과세사업자 중 아래 해당자 ※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자</td><td>① 개인 선정자 ② 일반과세자 중 아래 해당자 ※면세/과세를 겸업하는 일반사업자 중 지원금으로 면세사업을 수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사업자 ③ 간이과세사업자 중 아래 해당자 ※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자 ④ 면세사업자 ⑤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</td></tr><tr><td>지원금 사용 여부</td><td>사후 환급/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지원금으로 정산 불가</td><td>사후 환급/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지원금으로 정산 가능</td></tr><tr><td>예산 편성</td><td>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예산계획 작성</td><td>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계획 작성</td></tr></table>	구분	부가가치세 환급(공제) 대상	개인 및 부가가치세 미환급(미공제) 대상	선정자 유형	① 일반과세자 ※면세/과세를 겸업하는 일반사업자 중 지원금으로 과세사업을 수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 포함 ② 간이과세사업자 중 아래 해당자 ※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자	① 개인 선정자 ② 일반과세자 중 아래 해당자 ※면세/과세를 겸업하는 일반사업자 중 지원금으로 면세사업을 수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사업자 ③ 간이과세사업자 중 아래 해당자 ※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자 ④ 면세사업자 ⑤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	지원금 사용 여부	사후 환급/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지원금으로 정산 불가	사후 환급/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지원금으로 정산 가능	예산 편성	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예산계획 작성	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계획 작성
구분	부가가치세 환급(공제) 대상	개인 및 부가가치세 미환급(미공제) 대상											
선정자 유형	① 일반과세자 ※면세/과세를 겸업하는 일반사업자 중 지원금으로 과세사업을 수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 포함 ② 간이과세사업자 중 아래 해당자 ※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자	① 개인 선정자 ② 일반과세자 중 아래 해당자 ※면세/과세를 겸업하는 일반사업자 중 지원금으로 면세사업을 수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사업자 ③ 간이과세사업자 중 아래 해당자 ※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인 자 ④ 면세사업자 ⑤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											
지원금 사용 여부	사후 환급/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지원금으로 정산 불가	사후 환급/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지원금으로 정산 가능											
예산 편성	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예산계획 작성	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계획 작성											

○ 유흥업종

- 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
○ 위생업종

-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 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
○ 레저업종

-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
○ 사행업종

-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
○ 기타업종

-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